

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. 8. 29 선고 2023가단1107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3. 8. 29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경남 함안군 C 대 109㎡ 중 별지 도면 표시 ①, ②, ③, ④,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단층 컨테이너 가건물 1동 22.649㎡를 철거하고, 위 토지 109㎡를 인도하며,
나. 2019. 10. 1.부터 가항 기재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 김영하

별지